

# 플랫폼 3유형론 및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의 태도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I. 플랫폼 3유형론

2010년대 경부터 공유경제를 명분으로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전세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유희 자산을 활용하는 형태의 공유경제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인터넷망을 통해 급격히 플랫폼화하기 시작했고,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1세대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에 편승하며 혁신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는 거의 모든 전통 산업 판매망의 길목을 장악하며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에 대한 옹호와 반대의 논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논리들을 플랫폼을 옹호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면서 논의의 방향이 정리되지 못하고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여기서는 플랫폼에 대한 찬반의 논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나타난 플랫폼의 형태를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분리해 진행할 것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 1. 유형 1 - 구성사업자의 자격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 것을 형해화하려는 유형

플랫폼 산업 초기 공유경제의 명분으로 생긴 플랫폼들이다. 예컨대 운송업 중 택시 운송업은 본래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의 면허제도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고, 금융업과 숙박업은 국가의 인허가제도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었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영위가능한 사업방식이지만 치안, 위생, 금융 시장의 안정 등 다양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 업종 종사자의 자격이나 시설 요건 등을 엄격히 법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유경제론자들은 사적으로 소유한 유희자산을 활용하여 이처럼 면허나 인허가로 보호되는 사업에 면허나 인허가가 없는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2010년대 초반 급속도로 보급된 스마트폰 환경은 공유경제를 명분으로 택시운송업, 숙박업, 금융업 플랫폼 업체가 자리잡고 보급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명분과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우버(택시운송업), 에어비앤비(숙박업) 등이 등장하여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였고, P2P 대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플랫폼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 업체들은 세계 각국에서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 하던 전통적인 사업자들로부터 가장 거센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 우버의 경우 일본, 대만, 스페인, 벨기에 등 세계 각국에서 택시 면허를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의 택시 운전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작년 “타다금지법” 이라 불리는 입법을 통해 우버와 같은 형태의 플랫폼을 전면금지하였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형태 역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숙박업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sup>1)</sup>

## 2. 유형 2 - 서비스 제공자의 중개 및 알선에 대한 금지 법규를 형해화하는 유형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뿐만 아니라 중개 또는 알선도 법으로 금지된 전문자격제도 관련 시장에서 나타나는 플랫폼의 유형이다. 이 유형의 플랫폼의 경우 아직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자격 자체를 형해화시키려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중개 또는 알선의 합법화를 시도한다.

이 유형은 주로 의료 및 법률,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시장의 경우 공익성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고, 현저히 큰 공익성 때문에 이들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sup>2)</sup>, 직무 독립성의 유지 및 자본 지배 방지를 위해 동종자격 취득자를 제외하고는 동업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특히 의료 및 법률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2)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하여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업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7.26. 결정 2006마334)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규로 광고의 내용과 방식까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들 시장에 진출한 플랫폼들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중개 또는 알선이라는 플랫폼 본연의 영업행태를 그대로 이어가며, 전통적으로 이들 시장에서 금지해 온 중개 및 알선 금지, 동업 금지,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 3. 유형 3 - 영업행태에 특별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불공정한 시장 지배가 문제되는 유형

구성사업자의 자격이나 중개 및 알선에 있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플랫폼 자체에 대한 불법 논란은 없는 유형이다. 배달 플랫폼이나 택시 사업자 중개 플랫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플랫폼은 플랫폼 사업 자체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전혀 없다보니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초기 시장지배적 지위가 불확실하거나 충분한 경쟁 사업자들이 존재할 때는 소비자들에게 시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자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도움을 주고, 구성사업자들의 시장 확대에도 공헌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확실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이후에는 구성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독점적 이익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경우 플랫폼과 구성사업자, 소비자, 노동자의 거래가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남용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및 시행과 같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 II.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의 태도

### 1. 들어가는 글 - 변호사 중개 및 알선과 광고에 대한 기존의 규제

변호사 업계는 그동안 변호사 중개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률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하였다. 특히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은 법률브로커의 중개 및 알선 행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사건이기도 하였다. 변호사 중개 및 알선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원, 검찰의 공무의 연결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이에 변호사법은 변호사 중개 및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여 왔고, 변호사법과 유사한 이유로 의료법이나 약사법 또한 환자 유인행위 또는 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법이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은 상법상 상인의 지위로만 볼 수 없음을 천명해 온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이들 직역에서는 상업광고의 자유마저 관련법규에서 일정 부분 규제를 받아왔다. 변호사법 역시 변호사 광고의 자유는 변협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규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2. 변호사 플랫폼의 등장과 이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대응

전세계적인 플랫폼 광풍 속에 변호사 업계에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고, 그 규모 또한 급성장하는 추세였다.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플랫폼이 변호사 중개 및 알선 금지나 광고 제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최근 변호사수 급증에 따른 변호사 영업현황 악화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등의 명분을 근거로 슬그머니 업계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금년 변호사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윤리장전 및 광고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15년 법률서비스 중개 사이트 허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회원 가입비를 받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소개, 알선, 유인의 대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고”, “(회원 가입비를 받지 않는 경우)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변호사 플랫폼은 유무상을 가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 유권해석한 바 있다<sup>3)</sup>. 다만 금년 새로이 유권해석을 발표하며 변호사 플랫폼을 중개 플랫폼과 광고 플랫폼으로 이원화하여 구분한 뒤 중개 플랫폼은 금지이지만 광고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변화한 해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

### 가. 변호사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 및 알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변호사법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중개 및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2015.7.16. 법무부 유권해석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한편 현재 법무부와 법률 플랫폼 업체는 현행 법률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광고중개를 하는 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는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의 입법예고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 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사업자” 라고 명시함으로써<sup>4)</sup> 현재 변호사 플랫폼 업체의 영업행태가 알선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적시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년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단순광고라고 주장하며, 중개

4) 2020.9.28.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의 입법예고

해은 금융상품중개에 대해 단순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sup>5)</sup>

대부분의 변호사 플랫폼들은 이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또는 유권해석 대상 업체들과 비슷한 양태로 변호사들을 알선 및 중개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들이 타업종의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처럼 변호사 플랫폼 또한 알선 또는 중개 플랫폼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변호사법은 중개·알선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마저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변호사 플랫폼들은 최소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나. 변호사 광고 제한에 대하여

변호사는 직역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변호사법 등을 통해 광고의 자유 역시 타 직종에 비하여 제한되어 왔다.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변호사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5) 2021.8.22.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상기 변호사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변호사 광고의 주체는 ‘변호사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외 다른 자들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나 변호사 플랫폼 업체의 주장에 따라 백번 양보하여 광고 플랫폼을 허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광고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의 수권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규제할 수 있음은 변호사법의 명시적 내용을 살펴보기에 명백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금년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 광고규정을 각각 개정하여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발제문은 이에 대하여 변호사 광고규정을 규정의 형태로 제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무효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광고 자체가 2000년 이전까지 전혀 금지되었을 정도로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난 20년간 변호사 광고규정이 규정의 형태로 변호사들의 광고를 규제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거나 무시한 채 방만히 전개한 논리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변호사 광고규정에서 변호사들의 “전문” 표시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위반하여 징계를 한 사안에 대해 우리 법원은 “미등록 ‘전문’ 표시 광고 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849). 그럼에도 발제문에서는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까지 확정된 상기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원고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만을 교묘히 인용하고 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징계 등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았거나 묵살하고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비틀어 인용한 것인데, 공론의 장에서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하지 않은 발제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 3. 나오는 글 - 변호사 플랫폼의 순기능 제고 방안

상기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 플랫폼은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 광고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 시장인 변호사 시장과 같은 시장에서 플랫폼이 시장의 지지를 일부 받는 것은 그동안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소홀하여 소비자들이 정보비대칭의 어려움을 겪도록 한 것에 기인한 바가 있다. 물론 현행 변호사 플랫폼들은 광고비를 많이 지급한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최우선 노출되는 등 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보왜곡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변호사의 공공성과 직무 독립성, 그리고 자본으로 부터의 독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미흡했던 소비자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하여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체가 되어 변호사들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TF를 운영중에 있으며, 빠르면 연내에 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Ⅲ. 결어

최근 플랫폼의 폐해가 주목을 받으면서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백화쟁명식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유형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존의 법규가 금지하는 영역을 우회하려는 플랫폼과 기존의 법규가 금지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플랫폼 간의 논의가 뒤섞이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플랫폼이 어떠한 형태로 영업하는지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플랫폼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이나 대안없는 비판을 방지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변호사 플랫폼의 경우 과거 변호사법 등이 엄격히 금지하고 또 제한하는 영역에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업의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가 시행되는 동안 법률 시장의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지만 변호사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가 존재함을 우리 사회에 환기해 주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